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경 과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찬성자 33명)

나. 의안번호 : 제 2326 호

다. 발의일자 : 2025. 1. 17.

라. 회부일자 : 2025. 2. 6.

2. 제안이유

- 최근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재난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재난안전산업의 기

반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본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와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주요골자

가. 제1조(목적):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명시

다. 제3조(책무): 시장의 책무 명시

라.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사 조례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설정 명시

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행):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명시

바.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명시

사.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명시

아. 제8조(위원회 설치): 심의.자문 위원회의 업무 범위 명시

자.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구성 명시

차. 제10조(사무의 위탁): 실태조사,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명시

카. 제11조(포상):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2025. 2. 11.~2. 15.)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찬성자 25명)

나. 의안번호 : 제 2353 호

다. 발의일자 : 2025. 2. 3.

라. 회부일자 : 2025. 2. 6.

2. 제안이유

- 현재 재난안전 관련 산업은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되어있어 자생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나.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재난안전산업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
- 마. 재난안전산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2025. 2. 11.~2. 15.)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경 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2452 호
- 다. 발의일자 : 2025. 2. 3.
- 라. 회부일자 : 2025. 2. 6.

2. 제안이유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 신설 (안 제4조)
- 나.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규정 신설 (안 제5조부터 제7조)
-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안 제8조부터 제12조)
- 라. 재난안전산업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
- 마. 재난안전산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 (2024.11.14.~12.4.)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임명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의견 반영, 비상설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반영

II. 검토의견

■ 개 요

-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시장 안”), 제2326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하 “송도호 안”), 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하 “이상욱 안”)은 재난안전산업 시장의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난안전 진흥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이들 3개 안(시장 안, 송도호 안, 이상욱 안)의 내용은 조례의 형식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며, 시장 안은 ‘실증실험(안 제7조)’, ‘위원회 간사(안 제11조)’, “운영세칙(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표] 참조).

[표] 시장 안(제2452호), 송도호 안(제2326호), 이상욱 안(제2353호)의 구성 및 주요골자

시장 안(제2452호)	송도호 안(제2326호)	이상욱 안(제2353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1조(목적)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 - 시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름.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름.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름.
제3조(책무) -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제3조(책무) -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3조(책무) -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종합계획 포함사항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종합계획 포함사항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포함사항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5조(실태조사) -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제6조(실태조사) -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제7조(실태조사) -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	제8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 기관 우선 구매지원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 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 5.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 평가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증실험) -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지원 목적 및 지원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해야 함 - 성능·기술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 가능 -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 심의사항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재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가능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가능 제10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자문사항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행정2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 ⑥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1. 임명직 위원: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나.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중 재난안전사업과 연관이 있는 임직원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

-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행정2부시장의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재난안전산업 현황

-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1)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해당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적인 시장 형성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임.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의 57.2%에 해당하는 기업이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44,476개사)로 자생적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대변하고 있음([그림] 참조).
-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3.1.3일자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도 이루어진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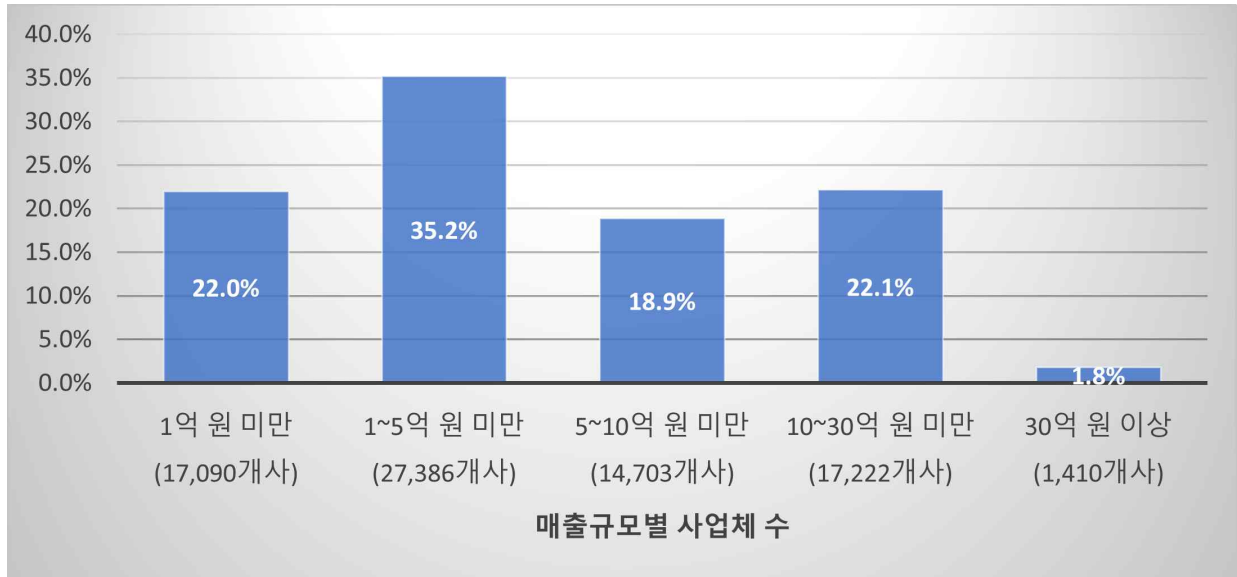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그림] 매출규모별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 행안부 '22년 조사기준)

- 실례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법 제5조²⁾에 따라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함으로써 산업 육성기반 구축,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지속 발전 환경 조성 등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상황임.

-
- 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법 제3조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 3개의 제정안이 이에 부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며 서울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행정적 기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제명

- 시장 안의 경우 송도호 안 및 이상욱 안과 달리 제명에서 “진흥”이라는 용어 대신에 “육성 및 지원”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관련 상위법의 법명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진흥”이 보다 합리적인 용어 선택이라 사료됨.

2) 정의

- 3개 안(시장 안, 송도호 안, 이상욱 안) 공통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시장 안],[송도호 안],[이상욱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법 제2조는 ‘재난안전산업’,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가 관련 상위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표] 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재난안전산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재난안전기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

- 다만,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이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대부분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필수 용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관련법의 조 번호를 인용하기 보다는 본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시장 안 제4조, 송도호 안 제5조, 이상욱 안 제5조는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장 안]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송도호 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상욱 안]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3개 안 모두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진흥, 자원확보, 교육, 홍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일한 목적의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 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송도호 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이상옥 안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명칭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 법 제5조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방향, 부문별 육성시책, 기반 조성,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 ‘진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송도호 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명명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한편, 송도호 안(안 제5조제3항)과 이상옥 안(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장 안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됨.

4) 재난안전산업 진흥(또는 육성) 사업

- 시장 안 제6조, 송도호 안 제7조, 이상욱 안 제8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시장 안]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송도호 안]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욱 안]

제8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
5.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개 안이 공통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또는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시장 안에서는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안 제13조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위탁기관이 시행하게 될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과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물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들이 우선 구매할지 여부는 시장 및 해당 기관장의 고유판단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욱 안 제8조제4호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으로 한정하는 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5) 실증실험

- 시장 안은 다른 2개 안(송도호 안, 이상욱 안)과 달리 제7조에서 재난안전 신기술의 “실증실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실증 실험에 따른 신청제품의 모집 및 공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시장 안]

- 제7조(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 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지원 목적 및 지원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기술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이는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재난안전기업 제품·기술이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실증실험의 대상을 ‘재난안전신기술’로 국한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으로 일반화하여 시행과정에서 누락되는 기술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

- 시장 안 제8조 및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송도호 안 제8조 및 제9조, 이상욱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계획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장 안]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행정2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송도호 안]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욱 안]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 나.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중 재난안전사업과 연관이 있는 임직원
-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개 안 모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라는 명칭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심의·자문 사항은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지정 및 교육훈련 등으로 대체로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여기서, 시장 안 제8조의 경우 심의사항(제2항)과 자문사항(제3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심의와 자문을 혼용하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시 부패영향평가 결과⁴⁾에 따른 것임.
- 다만, 시장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명기된 자문사항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도 및 성격을 감안해 자문사항 보다는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

4)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9484, ‘24.11.22.

으로 판단됨.

[표] 위원회 관련 주요내용 비교표(위원회 명칭, 심의·자문사항)

구분	시장 안	송도호 안	이상욱 안
명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심의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자문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 안 제8조제4항은 ‘공동위원장 2명(행정2부시장 1명, 위촉위원 중 호선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고,
- 이상욱 안 역시 제11조제1항에서 ‘공동위원장 2명(당연직 1명,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1명)과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 송도호 안 제9조제1항은 ‘위원장 1명(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른 특징임.

- 공동위원장 체제의 경우, 위워회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의사결정의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행정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 이보다는 행정2부시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임명직인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2인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는 대안이 오히려 위원회 체계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산업 분야([표] 참조)가 자연재난 예방산업, 사회재난 예방산업, 재난 대응산업, 재난 복구산업,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위원수를 '9명 이내'(송도호 안)보다는 '15명 이내'(시장 안, 이상욱 안)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표] 재난안전산업의 분류

대분류(5)	중분류(16)	소분류(71)
1. 자연재난 예방산업	11.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5
	12. 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5
	13. 기타 자연재난 예방산업(황사, 대설, 폭염 등)	9
2. 사회재난 예방산업	21.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5
	22. 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5
	23. 감염병, 화재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4

	24. 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산업(산업재해, 범죄, 보안 등)	7
3. 재난대응산업	31. 재난 상황관리 관련 산업	5
	32. 재난 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산업	8
	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	3
4. 재난복구산업	41. 시설 피해 복구 산업	3
	42. 재난현장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	2
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51. 재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3
	52. 재난 관련 안전시설 관리, 위험물품 보관 및 경비·경호업	3
	53. 재해보험 서비스업	1
	54. 재난 관련 교육·상담·컨설팅업	3

[출처: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 그리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3개 안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토록 한다는 맥락에서는 동일하나 이상욱 안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됨.
- 이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위촉직 위원에 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이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위촉직 위원에 포함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명수를 3명으로 고정하기 보다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한정된 위원 수 내에서 분야별 형평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표] 위원회 관련 주요내용 비교표(위원회 구성)

구분	송도호 안	이상욱 안	시장 안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공동위원장 - 당연직 1명 - 위촉직 1명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자·출연 기관 중 재난안전사업과 연관이 있는 임직원 -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동위원장 2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공동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위촉직 1명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임명직 위원> -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위원> -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으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상욱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 송도호 안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이 안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에, 시장 안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를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토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⁵⁾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단서에 따른 3가지 예외규정(법정 위원회, 회의빈도, 공정성 문제) 이외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됨.
-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를 위해선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송도호 안과 이상욱 안이 설득력 있어 보임.

5)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3.7.24>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전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 위원회 관련 주요내용 비교표(위원회 구성)

구분	시장 안	송도호 안	이상욱 안
위원의 임기	-	- (규칙으로 정함)	2년(1회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위원회 존속	비상설 ※ 안전 발생→구성→ 심의·의결→자동해산	- (규칙으로 정함)	-
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장 - 위원회 대표 -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참석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 (규칙으로 정함)	공동위원장 - 위원회 대표 -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회의 참석,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간사	간사 1명(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 (규칙으로 정함)	-
운영세칙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규칙으로 정함)	-

8)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 시장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와 이상욱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송도호 안은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시장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이상욱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 2개 안 모두 기본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⁶⁾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⁷⁾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7)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다만, 이상욱 안 제13조제2호는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촉토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는 이상욱 안 제11조제3항제2호다목의 위촉직 위원 대상 중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연계된 것이라 이해되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여 해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8) 사무의 위탁

- 3개 안 모두 실태조사와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이사항으로는 이상욱 안 제17조제2항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례(「서울특별시 행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시장 안]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송도호 안]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이상욱 안]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9) 포상 또는 표창

- 시장 안과 송도호 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상욱 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장 안]

제14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송도호 안]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상욱 안]

제18조(표창)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일정한 공적과 성과를 가린다는 점에서 ‘포상’이나 ‘표창’은 공통되나 ‘포상’은 표창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있으며, ‘표창’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용어인 ‘포상’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3개의 제정안(시장 안, 송도호 안, 이상욱 안)은 2022.1.4.일 제정된 후 2023.1.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재난안전 관련 각종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발견시켜야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3개의 안이 조문의 내용상 그 골격과 취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일부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두고 있는바, 3개 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